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1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・이학영・이원택

어기구・윤준병・주철현

정을호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 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, 대학, 연구소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의	수립	등)	1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
~ ⑥ (생 략)				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
				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
				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
				기관, 대학, 연구소 등 농업생
				명자원 관련 기관・단체 등의
				의견을 들어야 한다.